

# 의안검토보고

의안 번호	제 77 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1999. 6. 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재근		

## 1. 검토내용

### 가. 제안이유

제3차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유료화장실승인 조항은 과거 유료화장실에 적용해서 제정된 조례로 현재 유료화장실은 없으며, 적합치 않으므로 폐지코자 함. (현행 제16조, 제17조)
- 과태료부과징수 등 조항은 과거 유료화장실에 적용해서 제정된 조례로 현재는 적합치 않으므로 폐지코자 함.(현행 제18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의 : 제3차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되었음.

## 2. 검토결과

□ 현행조례는(1995. 3.20 조례 제277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음을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1997. 3. 7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된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유료화장실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정을 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제5장 제16조의 유료화장실 및 제17조의 준수사항 규정 폐지
- 제6장 제18조의 과태료 부과징수규정과 이에 관련되는 별표1 및 별지4 내지 별지7호 서식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 검토의견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토록”되어 있어, 공중화장실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규정이 없는 사항을 하위자치법규에 규정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므로 안 제16조내지 제18조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의 명칭 변경 및 환경부령의 규칙(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규칙)과 상이한 다음사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4조제2호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로(‘97.12.13, 개정 법률 5448호)
- 제4조제3호 “도소매진흥법 제2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로(‘97. 4.10 법률 제5327호 제정)
- 제4조제10호 “석유사업법 제12조”는 “석유사업법 제2조”로(‘99. 2. 5 법률 제5783호 개정)

- 제4조제11호 “관광진흥법 제3조”는 “관광진흥법 제2조”로(‘99. 1.21 법률 제5654호 전문개정)
- 제5조제1호중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을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으로 개정(환경부령)

### 3.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동법시행규칙 제35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 도소매진흥법 제2조
- 석유사업법 제2조
- 관광진흥법 제 2조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 관계법령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第16條 (公衆化粧室의 設置 및 관리) 市長·郡守·區廳長은 多數人이 通行하거나  
모이는 場所에 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化粧室이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衆화粧室을 設置하고 이를 衛生的으로 유  
지·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  
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깊은 변이 85센티미터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이상  
(양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이상)일 것
  3.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  
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표기를 할 것
  5.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6.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쥐 및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유통산업발전법

制定 1997 改正 1997 1997 1998	4·10 法律第5327號 12·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 設備에 관한法律) 12·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等의변경에 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2·28 法律第5529號(政府組織法)
------------------------------------	---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8·2·28>

1. “流通產業”이라 함은 農·林·畜·水產物 및 工產品의 都賣·小賣·保管·包裝 및 이와 관련된 情報·用役의 제공등을 目的으로 하는 產業를 말한다.
2. “賣場”이라 함은 商品의 販賣와 이를 지원하는 用役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場所를 말한다.
3. “大規模店鋪”라 함은 동일한 建物안에 설치된 賣場面積의 合計가 3千평방미터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賣場을 가진 店鋪의 集團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店鋪의 業態에 따라 그 賣場面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定期市場”이라 함은 一定區域안에서 다수의 需要者와 供給者가 定期的 또는 季節的으로 모여 商品을 賣買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고, “臨時市場”이라 함은 一定區域안에서 다수의 需要者와 供給者가 당해 市場의 開設者가 지정한 기간에 一時的으로 모여 商品을 賣買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5. “都賣配送業”이라 함은 集配送施設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商品을 都賣하거나 手數料를 받고 위탁받은 商品을 都賣店鋪 또는 小賣店鋪에 공급하는 事業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全文改正 1997·12·13 法律第5148號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乘用自動車 및 乘合自動車를 말한다.
2.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이라 함은 旅客自動車運送事業·自動車貸與事業 및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을 말한다.
3.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需要에 응하여 自動車를 사용하여 有償으로 旅客을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自動車貸與事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自動車를 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旅客自動車터미널”이라 함은 道路의 路面 기타 一般交通에 사용되는 場所와 에서 乘合自動車를 停留하거나 旅客을 乘下車시키기 위하여 設置된 施設 및 場所를 말한다.
6.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이라 함은 旅客自動車터미널을 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 租借하는 事業을 말한다.

## 〈 현 행 법령 〉

###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 ( 1995. 3. 20 )  
조례 제277호

제 4 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8.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10.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3. 기타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